

2018년도 드림스타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국가	호주
연수기간	2018.6.17(일) ~ 6.24(일)
연수인원	총 20인



【 목 차 】

I . 국외연수(1팀) 출장개요	3
II . 국외연수(1팀) 방문국가 아동복지 이해.....	5
III . 국외연수(1팀) 방문기관 결과보고.....	16
IV . 총 평.....	51
V . 시사점.....	53

국외연수(1팀) 출장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호주의 주정부(아동관련부서), 아동관련 기관(단체)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아동 사례관리 및 정책 등 국내 복지제도 발전방향 모색
- BestStart 사업 운영현황, 제도 등을 파악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개선방안 마련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수행인력(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 연수 개요

○ (연수국가 및 연수기간)

국가(도시)	기 간	기 관
호주 (멜버른,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6. 17.(일) ~ 6. 24.(일)	VICTORIA State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외 5개 기관

○ (연수참가자) 총 20인(보건복지부 1인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1인/시·군·구 18인)

구분	성명	성별	소속	직위(급)
1	박종한	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관
2	홍윤지	여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대리
3	박재준	남	서울 강동구	지방사회복지서기
4	정윤미	여	서울 강북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	이경화	여	서울 서초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	문지희	여	대구 달서구	지방사회복지서기
7	문진옥	여	대구 서구	지방행정주사보
8	김미연	여	인천 서구	지방행정주사
9	박지애	여	광주 서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	구정희	여	경기 동두천시	지방행정주사
11	김은주	여	경기 오산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2	장미옥	여	경기 의왕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3	이영주	여	경기 의정부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4	박수옥	여	강원 삼척시	지방행정주사
15	김성관	남	강원 태백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6	이순필	여	충북 제천시	지방행정주사
17	채수란	여	전북 군산시	지방행정서기
18	오보영	여	전남 나주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9	배영자	여	경북 경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
20	안혜선	여	경남 밀양시	지방사회복지서기

○ (연수내용) 호주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부·민간 기관방문

- 방문시간 : 기관별 2~4시간

- 주요내용

• 주정부 및 아동관련 기관(단체) 업무 및 관련 사업* 소개 등

* 아동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 대상아동 발굴시스템 및 사례관리 체계 등

○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6.17.(일)	(한국)인천	한국 인천국제공항 → 호주 시드니국제공항 (KE121)
2일차	6.18.(월)	(호주)멜버른	호주 시드니공항 → 호주 멜버른공항 (JQ 505)
			VICTORIA State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빅토리아 주 정부 교육부 (Best Start 소관부처)			
City of Casey			
Best Start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			
Berry Street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을 위한 공립복지기관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			
4일차	6.20.(수)	(호주)골드코스트	빅토리아 주 아동 및 가족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5일차	6.21.(목)		호주 멜버른공항 → 호주 골드코스트공항 (JQ442)
		Brave hearts	
			성학대 아동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관
6일차	6.22.(금)	(호주)브리즈번	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Child Safety Service
			퀸즐랜드 주 정부 아동안전서비스부
7일차	6.23.(토)		(현 장견학) C&K Mount Gravatt West Community Childcare Centre
8일차	6.24.(일)	(한국)인천	호주 브리즈번국제공항 → 한국 인천국제공항 (KE124)

국외연수(1팀) 방문국가 아동복지 이해

□ 호주_Best Start

○ 추진배경 및 목적

- ‘아동이 먼저(Children First)’ 라는 호주 빅토리아 주지사의 정치적 선언과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이 때부터 초기 위험요인들에 대한 인식과 조기개입의 중요성 강조
- 아동 및 가족 지원, 보건서비스, 조기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모든 아동 및 가족 욕구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0(임산부 포함)~8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젝트로, 법무부(법무예방부서), 체육관광연방게임부(Commonwealth Game), 빅토리아 경찰과 사회서비스기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혁신산업지역 개발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행정자치부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협력
- (재정체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동적 후원으로 진행

○ 주요내용

- (서비스 전달원칙)
 - 지역 욕구 충족을 위해 기획-계획-평가 과정을 거친 연계서비스를 통해 부모와 지역사회를 지원

- 아동의 안녕(wellbeing) 증진을 위해 가족에게 지역자원 연계 및 학교 네트워크·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아동과 가족 욕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아동의 일상생활 내에서 부모, 조부모, 주양육자 등 다른 보호자들과의 관계 구축
 - 돌봄과 지지의 연속선상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2차, 3차 서비스 조정
 - 우수하게 평가된 프로그램의 공유
 - 서비스 계획, 개입 등의 제반 과정을 평가
- (서비스 전달체계) 지역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유한 사업으로 기획되며, 지역별 Best Start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 지역 파트너십은 Best Start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 파트너십 구성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주양육자 대표, 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자,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관련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집단으로 구성
 - 아동양육, 유아기 서비스 개입, 지역 중심 서비스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많은 이점을 창출
 - 부모, 지방정부,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 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집단(체육 및 여가 관련 모임, 옹호 집단 등) 6개의 필수 파트너 그룹으로 구성

【표 1】 핵심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양질의 산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임신 관리를 촉진시키는 능력이나 기술 강화
자녀양육 관련 부모교육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 학습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능력이나 기술을 강화 • 부모가 읽기, 쓰거나 수 계산법 관련 교육 지원
조기학습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할 때 특별한 욕구에 초점을 두어 유아 및 가족 지원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초반 아동의 교육 기회 제공, 취학 후 3년동안 아동에게 양질의 학습 및 보호제공	-
아동 및 부모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와 부모 모두의 건강관리(건강정보, 모유수유, 영양, 예방주사, 건강진단 등) 실시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허브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역사회 내 허브로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학교의 중요한 역할 인지 및 지원 • 필요 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최대한 원 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족기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 지향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를 영유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 실시
적절한 주택공급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영역에서 공적 프로그램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실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프로그램 등 시행

○ 사업성과

- (성과관리체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성과와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증진시키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13개 지역에 걸쳐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는 Best Start 해당지역의 지역사회 프로파일과 지역특성을 개발하여 반영하되 3가지 영역¹⁾에서 평가
 - 주(州) 전체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평가 프로파일, VicHealth 파트너십 분석 도구, 서비스 협력관계 도구, 아동 및 부모에 대한 포괄적 검사, 다양한 가족 전략, 조정자와의 인터뷰, 해당 지역 방문 등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 활용
 - 대부분의 평가지표는 장·단기에 걸쳐 측정되며 평가 결과보고서는 정부에 제출해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
- (사업효과) 모유 수유 및 모자 건강서비스 참여율, 문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독서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 창출 및 부모의 참여 증대

1) 3가지 영역 : 건강과 안녕(health and wellbeing),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 안전(Safety)

□ 호주_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

○ 호주 아동보호체계

- (추진배경)

- 가족복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적 접근 강조함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 또한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닌 아동의 안전 및 가족복지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접근
- 학대행동, 방임행동 등 ‘행동(behaviours)’ 이라는 용어 포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정의함에 따라 정부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970년대 이후 아동을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족 기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 유엔 아동 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명

- (관련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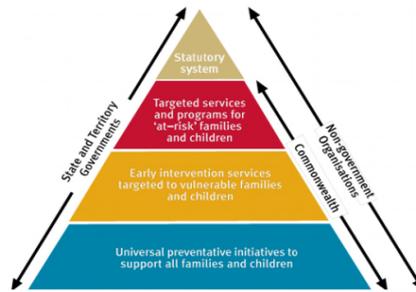
- 각 주와 관할 행정구역별 아동보호 관련 법률 입법화 및 정책·서비스에 대한 책임 행사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Queensland의 Child Protection Act 1999, New South Wales의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98 등 호주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 (담당부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Families, Older Australians and Service Information

- (추진체계)

-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DCPFS)에서 주로 전담하며, 민간 기관에서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을 담당

- 모든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위기(at-risk)상황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출처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2009). p.8

【그림 1】 호주 아동보호체계

- (추진절차)

-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나면 지방정부(state, territory)는 보호명령(Care and Protection Order)을 법원에 청구, 대리양육(guardianship and custody orders), 위탁보호(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arrangements), 지도감독(supervision), 일시보호(interim and temporary orders) 등의 절차에 따라 개입
- 지방정부의 경우,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 를 근거로 권한(Statutory power)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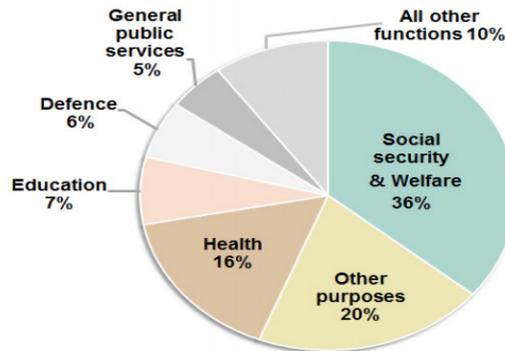
- (수혜아동 현황) 2013~2014년 1년 간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총304,097건) 중 143,023명의 아동에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 출처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2015). p.9

【그림 2】 호주 2013-2014년 아동보호서비스 수혜아동 현황

- (예산현황) 사회보장 및 복지(Social security & welfare)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6%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출처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2015). p.14

【그림 3】 호주 2015-2016년 아동보호 예산

- (주요내용)

① 집중서비스(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와 가정 외 보호

-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보호의 의미보다는 가족복지 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집중서비스 제공
- 가정 외 보호(OOHC, Out-of-Home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친인척 위탁 및 가정위탁(Family group homes), 가정기반 보호/Home-based care), 자립(Independent living) 등으로 구분
- 각 지방정부는 아동학대 위험요소 평가도구(consensus-based and actua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s)를 활용

② 부모교육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me, Tripple P)

- 호주에서 시작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Tripple P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창출 및 타국가에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으로 시행 중
- 지역사회 기반으로 부모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

- 안전한 환경만들기(Safe and engaging environment),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체벌대신 규칙정하기(Assertive discipline), 현실적인 기대치 정하기(Realistic expectations), 스스로를 돌보기 (Parental self-care)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 포함

③ 정보공유 지침

-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침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에 진입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 공유²⁾
- 아동 및 가족의 사생활,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 중시함에 따라 아동학대 담당자(Child Protective Worker)는 등록된 민간단체, 의료인(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es), 학교 관계자, 서비스 제공자(authorized professionals employed by service agencies)와 정보 공유
- 경찰을 포함한 관련기관(person in charge of a disability service, person in charge of a parenting assessment and skill development service 등)과도 정보 공유

④ Signs of Safety :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정비를 위한 6년 간의 Western Australia(WA) 지역 장기계획
-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아동보호 담당자와 가족, 학대피해아동·청소년, 민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해결중심’ 실천모델
 - ▶ 우리는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무엇을 걱정하는가?
(what are we worried about in how parents are caring for their children?)

2) Victoria 지역의 경우, ‘The Childrenm Youth ans Families Act’에서 명시한 전문가는 아동보호와 가족복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명시(2005)

- ▶ 무엇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what is working well?)
- ▶ 최근 아동의 안전은 어떤 상태라 판단되는가?
(a judgement around the current safety of children)
- ▶ 앞으로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what needs to happen to ensure future safety?)

○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① 가족지원제도

-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A&B)

• 가족세제급여 A형

- ▶ 16세 이하의 부양아동, 16~24세의 학생,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급여 지급
- ▶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소득 이하 가구대상 지급
- ▶ 소득조사에 근거하여 자녀 수, 자녀연령에 따라 다르며 보호 시설 입소 아동에게도 지급
- ▶ Family Assistance Office(FAO)나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급여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하며, 급여수급과 관련한 소득변화 신고 필요

【표 2】 가족세제급여 A형의 최대 급여액

(단위 : \$)

구분		2주	연간
자녀 1인당 기본 지급액	18세 미만	52.64	2,098.75
	18~24세	70.56	2,565.95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13세 미만	164.64	5,018.75
	13~15세	214.06	6,307.20
	16~17세	52.64	2,098.75
	18~24세	70.56	2,565.95
	인기된 보호시설의 경우(0~24years)	52.64	1,372.40

※ 자료 :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2011)

• 가족세제급여 B형

- ▶ 한부모 가정, 가족 수입원이 한 명 또는 부부 모두 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
- ▶ 16세 미만 자녀, 18세 이하의 전업학생으로 거주요건 및 일정 소득 미만 대상에게 지급
- ▶ 그 밖에도 가족세제보충급여(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를 지급하여 정상적인 소득신고 장려

【표 3】 가족세제급여 B형의 최대 급여액

(단위 : \$)

구분	2주	연간
5세 미만	140	4,004.05
5~18세	93.58	2,898.10

※ 자료 :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2011)

- 양육급여(Parenting Payment)

- 한부모 가정과 양육책임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 한부모 가정 중 8세 이하의 아동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정 중 6세 이하의 아동 양육 시 급여 지급
- 소득 및 자산조사, 구직활동 수행 시 지급하며 한부모의 경우 최연소 자녀가 7세가 되는 시점부터 시간제 근로(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및 훈련 프로그램 참가 시 지급

-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 출산 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입양 시 제공되는 육아지원비
- 출산, 입양 3개월 전 가족지원사무소로 베이비보너스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입양 후, 52주 내에 신청

※ 베이비보너스는 유급육아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scheme)과 동시 지급 불가 단,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자녀는 베이비보너스, 다른 자녀는 유급휴가수당 지급 가능

② 보육지원제도

- 아동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 아동보육은 인가된 시설(Approved Child Care)에서의 보육과 가족 지원사무소(FAO)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제공하는 보육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4시간 보육급여를 지원하며, 부모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혹은 직업교육 수행, 장애, 간병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시간까지 지원
- 부모가 모두 학업 및 근로로 인해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50시간 이상 서비스 지원

【표 4】 아동보육급여 기준 및 최대 급여액

(단위 : \$)

구분	지원기준	최대 급여액
시설보육 (Approved Care)	• 소득조사 통해 지원 가능	• (아동 1인) 주당 189.00, 시간당 3.78 • (아동 2인) 주당 395.00, 시간당 3.95 • (3인 이상) 주당 616.42, 시간당 4.10 1명 추가 시 616.42+205.47
등록보육 (Registered Care)	• 부모가 근로 또는 직업교육, 학업 중일 경우, 소득조사 없이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급여	• (미취학아동) 시간당 0.632 주당 50시간, 최대 31.60까지 가능 • (취학아동) 미취학 아동 급여의 85%

※ 자료 :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2011)

- 보육조세환급제도(Child Care Rebate: CCR)

- 소득이 높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부모가 모두 근로 활동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 보육료의 최대 50%를 환급,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국외연수(1팀) 방문기관 결과보고

【목적】

- 호주의 주정부(아동복지부서) 및 아동관련 기관(단체) 업무 및 사업 소개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등 복지제도 발전방향 모색

□ 방문기관 목록 (총 6개 기관)

○ 호주 (멜버른)

- 1) VICTORIA State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2) City of Casey
- 3) Berry Street
- 4)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

○ 호주 (골드코스트)

- 1) Brave hearts

○ 호주 (브리즈번)

- 1) 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Child Safety Service

□ 방문기관 세부내용

방문기관1			
6. 18.(월)	기관명	빅토리아 주 정부 교육부	
	소재지	GPO Box 4367 MELBOURNE, Victoria 3001	
	연락처	+61 3 9637 3303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vic.gov.au

■ 운영 개요

1) (주요현황)

- 빅토리아 주 내 590만명(호주 전체 인구 1/4)의 주민 거주
- 다문화도시로 약 200여개의 타국 출신이며, 260개의 언어 및 방언 사용, 135개의 종교를 가지는 등 다양한 민족 거주

2) (기관목표)

-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 보장
- 서비스제공자인 파트너(협력기관)과의 협력
-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서비스 지원

3) (주요업무)

-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대상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서비스 제공
 - ▶ 유아·초·중·고등 교육과정 개발
 - ▶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관리
- 교육 관련 예산을 주 정부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기술분야/정보 분야 등도 관리

4) (조직현황)

- 7개 팀(정책 기획팀, 유아 및 학교교육 관련 팀, 고등교육 관련 팀, 지역서비스팀 등)으로 구성
- 빅토리아 주 북동부, 북서부, 남동부, 남서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 사무소 분포

■ 주요 내용

1) 아동관련 사업

가) 유아교육(Early Childhood)

- ① 빅토리아 주 0~4세까지의 380,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4,430개의 아동서비스 운영
- ② \$2,900,000,000를 투자하여 유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
- ③ 유아교육은 빅토리아 주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며 모자보건, 유아 탁아시설, 유치원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

㉑ 모자보건센터

- 0세~6세까지 276,329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센터 운영

㉒ 유아탁아시설

- 0세~5세까지의 미취학아동 148,000명을 대상으로 돌봄지원

㉓ 유치원

-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79,000명 지원
- 각 아동은 주 15시간, 연 40주 등원
- 초등학교 입학 준비, 모자보건센터 가족서비스 제공, 유아기 상담 등 지원

나) 학교 교육(School Education)

- ① 모든 아동에게 최고의 교육시설 지원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50억 달러 투자
- ② 조기아동, 초·중·고등학교순으로 자연스러운 발달 및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체계 마련 및 운영
 - 초등 예비 1년, 초등 6년, 중등 6년 총 13년 의무교육체제로 17세까지 학교 교육은 의무로 진행
 - 의무교육 중 마지막 2년은 대학, 사회진출 등을 위한 총력기간
- ③ 빅토리아 주 내 2,239개 학교 운영
 - 공립학교 1,528개, 카톨릭재단학교 492개, 사립학교 219개 운영
 - 공립학교는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며, 가톨릭재단학교 및 사립학교는 기금 일부 지원
 - 한 학급당 평균적으로 19명~22명 학생을 담당하며, 부모·지역사회·학교 내 대표가 학교를 감독·관리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재정의 90%를 직접 관리
- ④ 빅토리아 주 내 5세~18세 미만까지의 아동 952,178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실시
- ⑤ 2016년 새롭게 재정된 커리큘럼을 작년부턴 시행 중으로 영어, 경제, 지리, 예술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있으며 그 중 수학, 과학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힌디어 등 아시아어 교과목 포함
- ⑥ 고등 교육(전문대, 대학교육, 기술양성 교육 등)은 1,153,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2) 취약계층 및 원주민, 발달지연 아동 대상 조기개입서비스

구 분		내 용
대상		• 0세~8세 아동 중 취약한 환경 노출 아동 및 원주민 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 시행
사업지역		• 빅토리아 주 내 취약계층 및 호주 원주민 거주지역, 비영원 피난민 거주지역, 가정돌봄 밖에 있는 아동 밀집거주지역 등 30개 지역에서 운영 (15개 지표를 통해 사업운영지역 선정) • 30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목표		• 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조기개입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향상 •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지역사회 형성 • 아동조기개입서비스 참여에 대한 어려움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 아동발달 관련 부모지원 및 아동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
역할	주정부	• BestStart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BestStart 사업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데이터 공유 등
	지방정부	• 지역사회 유아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계획 수립 • 출생부터 입학 전까지의 지역사회 내 서비스 조정 등에 대한 방향 제시
	지역 사무소	•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 욕구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 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중앙 관리를 위한 보고 등
	파트너십	• BestStart 지역 사무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서비스 제공 등 • 주정부기관, 교육부, 사회복지부, 모자보건센터, 유치원, 호주 원주민 기관, 사회복지사, 지역주민서비스(난민지원서비스, 가정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 포함
내용		•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사회성발달서비스, 지역사회 내 놀이서비스, 원주민자녀를 위한 특별서비스 등 지원
특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제공) •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아동 및 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등 지역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책 마련 시, 협력 • 유치원 및 모자보건센터 참석여부를 통해 미참석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를 도모

3) Best Start 사업 개선

가) 추진방향

- 2012년 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협력관계(파트너십)은 정보공유와 지역 사회 내 공동체에 기반한 활동 2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인정받았으나 아동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미흡
 - 이에 결과 측정지표의 필요성이 두각됨에 따라 2016년 7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모델* 설정
 - * 조기개입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참여율 + 모자보건센터 이용률 측정(특히, 18개월 미만 아동 성장기에 대한 검진 이용률)
 - 호주 원주민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인 경우, 무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등으로 인해 참여 자체에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미참여 원인 및 참여 방해요소 파악을 통해 그에 대한 방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
 - 접근성과 관련한 질문(유치원 통학 어려움의 원인)을 입학양식서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면담으로 이어짐으로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이 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감에 따라 대상자와의 신뢰감 형성으로 긍정적인 효과 도출
 - 비예산으로 개선 가능한 작업과 파트너십(협력기관)과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
 - 베스트스타트 사무소에서 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참여 등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지표에 포함시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나) 개선방안(PDSA 모델)

① 개념(정의)

구분	내용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PDSA model for improvement. It consists of four main s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del for improvement (purple header) What are we trying to accomplish? (light purple box) How will we know if a change is an improvement? (light purple box) What changes can we make that will result in improvement? (light purple box) Plan (yellow folder icon) Do (green checkmark icon) Study (blue graduation cap icon) Act (red person icon) Arrows indicate a clockwise flow from Plan to Do, Do to Study, Study to Act, and Act back to Plan.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예산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모델(PD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려하는가?(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② 변화는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③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④ 계획 > 실행 > 연구 > 실천 순으로 행동 시행

② 활용사례(Hume 지역) 소개

구분	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많은 Hume 지역*을 대상으로 18개월 전 후 모자보건센터 검진 방문 횟수 증대 방법 모색에 대한 계획 수립 * 멜버른 북부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빈곤 대물림 및 난민이 많은 지역 • 18개월 전까지 모자보건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Campbellfield 지역 선정하여 ‘방문독려 문자서비스 송부’라는 계획 수립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가구에 문자 송부 및 미참여 가정에는 4주동안 추가 메시지 송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송부를 통한 참여자 증가율에 데이터 분석 결과, 문자 서비스는 참여를 증가시키지 못함을 확인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조사방법을 통해 문자서비스 대신 유선연락서비스로 계획 변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월 전후 방문예정 가정에 방문독려 전화서비스로 시행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동안 진행했으며, 20가구와 유선연락 연결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후, 50% 이상 모자보건센터에 참여함에 따라 전화서비스가 효과적인 것은 확인했으나 시간부족이라는 문제 발생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문예약 취소 시, 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변경

③ 주요성과

- 베스트스타트의 새로운 접근법은 지난 18개월 간 현장 적용 및 협력기관과의 함께 추진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올해부터 큰 성과 도출
-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호주 원주민 유치원진학률이 95%로 상향되어 일반가정보다 높아졌으며 빅토리아 전체 주의 유치원 입학률보다 높은 수치로 향상
- 난민아동과 비영어권 아동들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용률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관계개선, 아동교육 등에 긍정적 효과 창출
-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유치원 및 모자보건센터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보완

④ 향후 계획

- 빅토리아 전역에 걸쳐 발전된 접근성 강화 및 증거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법을 다른 기관과 공유
- 빅토리아의 가장 취약한 집단과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베스트스타트사업 접근법 정립
- 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웹포털의 지속된 개발을 통해 현장지원 지속

■ 질의응답

Q1 베스트스타트 대상아동은 몇 명인가요?

- ▶ 농촌지역처럼 아동수가 적은 지역, 캐시 지역처럼 넓은 지역 등 지역규모에 따라 아동 수가 상이하며, 베스트스타트의 경우, 대상 수보다는 지역 수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Q2 베스트스타트 지역사무소의 운영형태가 어떠한가요?

- ▶ 30개 지역의 사무소는 모자건강센터, 유치원, 교육부,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기관, 지역 내 주민서비스 등 다양한 협력기관(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내일 방문할 Best Start City of Casey Office에서 파트너십 운영형태의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3 베스트스타트사업을 교육부에서 운영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 베스트스타트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사회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사업대상이 아동임에 따라 아동이 주로 활용하는 교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Q4 다양한 협력기관(파트너십)과 연계 운영 시, 어려운 점은 없나요?

- ▶ 파트너십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 개선된 모델을 활용하면서 각 기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외 공유의 장을 통해 각 기관의 문제점, 어려운 점 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기관과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Q5 사업지역이 30개 지역에서 향후 확대가 될 계획이 있나요?

- ▶ 2002년 30개 지역으로 시작한 후, 현재까지 전혀 확장되지 않았으며, 정부예산 미확대로 사업지역 확장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Hume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새로운 모델은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Q6 유치원은 주15시간 이용하는데 평일야간, 주말 등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 ▶ 하루종일 돌봄을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며, 이 외 패밀리케어시스템(가족들이 케어해주는 시스템) 이용하기도 합니다.

■ 시사점

- 베스트스타트 사업은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모자보건센터, 유치원, 아동보호기관, 지역 내 주민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를 연계하는 파트너십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하며, 베스트스타트 사업 및 현안 등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논의하는 등 파트너십 기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베스트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모자보건센터 미참여 원인 분석, 협력 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설문조항 추가 등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미참여 원인, 원인에 따라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장사진



방문기관2			
6. 19.(화)	기관명	베스트스타트 캐시 오피스(Best Start City of Casey Office)	
	소재지	Narre Warren VIC 3805 Australia	
	연락처	+61 3 9705 5200	홈페이지 http://www.casey.vic.gov.au/community-services/children-families/best-start

■ 운영 개요

1) (기관목표) 아동 및 가족의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학습 및 발달 최적화

2) (지역특성)

- 출생률은 높은 편이나 모자보건센터 검진 등 프로그램 참여율은 평균보다 낮은 편
- 원주민,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으로 가정폭력, 빈곤의 대물림, 아동보호 취약, 거처가 없는 아동 등의 문제 발생

3) (주요업무)

-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조기중재사업,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 진행
- 새로운 접근법에 따른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 추진 및 관련 결과 관리
-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회의 개최를 통해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마련

4) (조직현황)

- 사무소 규모에 따라 운영담당과 실무담당 등으로 구분
- 서비스는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분야별 협력기관(유아교육담당, 가족 내 데이케어담당, 인적서비스부, 가족서비스부 등)에서 제공
 - 파트너십 운영을 통한 서비스 연계 시, 가장 중점되는 사항은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및 인력 구성, 기관 방문 거리 등을 고려
 - 파트너십(협력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함에 따라 파트너십 기관과의 정기적 회의(2달 1번, 1회 3시간)를 통해 지방정부 및 주정부 현안, 새로운 접근법 등에 대해 논의

【참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파트너십(협력기관) 종류

구분	내용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적서비스부 : 취약한 가정에 서비스 혜택 지원 • 가족서비스 : 양육관련 부모교육, 재정보조, 무주택자 지원 등 • 왕립식목원 : 식목원 내에서 다양한 가족, 아동프로그램 진행 • 유아교육 보육, 도서관, 학교 •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중재 사업 기관 • 데이케어센터 : 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주요 내용

1) 모자보건서비스 (MCH:Maternal & Child Health Service)

- 0세~6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 수유 및 영양, 아동의 사고예방 및 시력 등 건강 관리, 부모-자녀 관계형성, 긍정적인 양육태도, 출산 후 우울증 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보육서비스

○ Family Day Care

- 가정보육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 0세~12세까지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및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 보육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파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Long Day Care

-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하는 부모 중 0세~6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 Outside School Hours Care

- 방과 후 및 방학기간에 학교 또는 외부 대리인을 통해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OSHC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유치원

- 아동의 건강 및 복지 향상, 사회적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원
- 유치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비율로 비용이 발생하며, 현 시설에서는 33% 정도가 면제자로 구성
- 교사 1인당 11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일원화된 국가적인 프로그램 대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 진행
- 우리나라 유치원의 교육일정처럼 한 반에 있는 모든 아동이 같은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룹 활동 이외에는 아동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각 개인별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진행
- 공립유치원은 오전9시~14시까지 주 15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의 돌봄은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캐시사무소의 경우 종일반이 운영되는 유치원이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주로 맞벌이 가정이 이용

○ Dad's Matter Programs

- 0세~10세의 아동이 부(父)와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 가족구조 내 아빠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아동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게임활동, 스포츠활동, 요리활동, 음악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 Best Start

가) 주요활동

- 부모 및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실시
- 어린이 주간 행사 실시
- Dandenong & District Aborigines Cooperative의 원주민 아동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① 계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투자 대비 장기적 성과 미약
-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및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증가

② 진행절차

- 서비스 참여 독려를 위해 협력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 3가지 목표 수립 및 목표 성과 달성 정도 측정
-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특정조사방식 개발 및 조사 진행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논의 및 PDSA(Plan, Do, Study, Act) 4가지 영역으로 활동 진행

③ 조사방법

- 주기별 조사(3월,6월,9월,12월)를 통해 자료 통합 및 통계표 관리
- 매달 사업역량 관련 조사평가 및 정확한 수치를 통한 구체적 목표 수립
-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를 통해 매해 출석률 및 결석인원, 결석사유 등을 파악하는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출석률이 85% 미만인 경우 베스트스타트 사무소 담당자와 해당 유치원 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사유 조사 및 효율적인 개입방안 논의
- 해당 접근법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현재는 다양한 조사를 단기, 소규모로 진행 중이나 정착을 통해 점차적으로 기간 등을 조정

④ 운영사례

구분	내용
Kindergarten Greeting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 등원은 하지만 수업시간에 자거나 그룹과 동떨어져있는 4명 아동을 대상으로 아침인사방법 변화 ▶언어적으로 진행하던 아침인사방법을 악수 등 신체접촉을 통한 방법으로 변경(호주는 보통 스킨십을 하지 않음) ▶해당 방법을 2주 동안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출석을 향상 및 또래관계,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감 형성 등 긍정적 변화 도출 • 현재도 진행 중인 상태로 다른 반 및 타 유치원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상태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School Outreach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아동 관련 서비스 등 지원여부 등에 대해 확인 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조사방법 • 비공식적이며, 친근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기 위해 아동의 하원을 기다리는 시간 등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진행 • 교사가 교육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이 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캐시사무소 등에 정보 요청
SMS Messaging to M&CH Fami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센터 아동발달검사 검진예약자 중 미참여 사유 파악을 위해 시작한 조사방법 • 예약일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에게 문자 송부하는 형태로 개선하였으나 이에 대한 큰 성과가 없음에 따라 예약 당일 문자 한 통을 추가적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방법 변경 • 미참여 사유 중 취약계층의 경우, 검진 예약 등과 관련하여 전화비용지출 등의 문제로 전화하기가 어렵다는 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소 문자주소 안내 및 발송문자 확인 후, 모자보건센터에서 전화하는 것으로 방법 변경 • 참여 독려를 위해 문자 내용, 예약당일 문자 송부 시간 등에 대해서 협력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

⑤ 효과

- 지역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 분야 선택, 서비스 이용 독려
- 연계협력기관과 서비스 절차 및 진행 시 장애와 성과 내용 등과 관련 의사소통
- 기존 데이터 사용과 개발을 통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통해 서비스 질과 이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근법을 다르게 시도하여 서비스 효과 증대

■ 질의응답

Q1 협력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있나요?

- ▶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십(협력기관)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 전문성 등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Q2 한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조례처럼 파트너십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정이 있나요?

- ▶ 조례나 법으로 규정된 협력체는 아니며,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3 모자보건센터(보건소) 이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 주당 1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예약일에 미방문시 연락(유선, 문자 등)을 통해 미참여 사유를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다시 정합니다.

Q4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 ▶ 보건소 이용은 전액 무료이며, 유치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비용이 차등으로 발생합니다.

■ 시사점

- BestStart 사업은 각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한 대상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BestStart 사무소가 지역사회 내 커뮤니케이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아동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 각 아동 성향의 차별성을 인정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은 프로그램 각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캐시사무소는 대상자가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복도 내 ‘Quality Improvement Plan’ 이라는 공간 마련한 것을 보며 참여자의 욕구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음.

■ 현장사진



방문기관3			
6. 19.(화)	기관명	베리스트리트(Berrystreet)	
	소재지	Eglemont VIC 3084 (이글몬트사무소-빅토리아주 북부지역 담당)	
	연락처	03 9450 4700	홈페이지 https://www.berrystreet.org.au

■ 운영 개요

1) (기관목표)

-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긍정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 도모

2) (설립배경)

- 1877년 질병, 빈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유기 등으로 유아사망률 높은 편
- 주지사의 부인인 보웬(Lady Bowen)의 도움으로 멜버른의 여성들이 ‘불행하게 죽어가는 아기들과 타락한 여성들’ 의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모금 진행
- 빅토리아 유아 보호시설(Infant Asylum)을 설립을 통해 아동 및 가족 지원

3) (주요연혁)

- [1877년] 빅토리아 유아 보호소(Victorian Infant asylum) 설립
- [1881년] ‘Berry Street Babies Home and Hospital’ - ‘foundling’ 로 명칭 변경
- [1907년~1975년] 아동 돌봄을 위한 전문 간호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 [1994년] 아동복지 철학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베리스트리트와 *서덜랜드 아동 보호소와 합병
 - * Selina Sutherland가 창립한 방치아동지원시설
- [1995년] Auguste Meglin이 다이아몬드 크릭에서 40에이커 저택을 기부하여 아동을 위한 영구주택을 제공 가능
- [2010년] 베리스트리트 전략 방향 2027 개발
- [2012년] 베리스트리트 아동연구소 설립
- [2012년] Grampians 지역의 제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Lisa Lodge와 합병
 - * 발라라트라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1970년 파견된 젊은 여성들에게 숙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보호관찰관들이 설립한 시설

4) (주요업무)

- 20개 영역(주거지원, 청소년, 아동·가족)에서 서비스 지원
- 원주민 아동·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활용가능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학교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대응, 트라우마 치료,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등 제공

5) (조직 및 인력현황)

- 빅토리아 주 내 총 8개 사무소가 있으며 베리스트리트는 빅토리아 주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기관
- 상주직원 140명, 거주형 직원 70명, 위탁 돌봄직원 160명으로 구성
- 재정구조 등
 -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40~180 달러 내에서 기부
 - 모금활동, 유산 남기기, 사업장기부, 기업 파트너십, 자원봉사 등을 통해 운영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지식연구소 (Childhood Insti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서비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서비스-시스템-자원 등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 진행 • 교육, 연수, 미디어, 출판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 공유 •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모델 제시(BSEM : BerryStreet Education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학생 및 교사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 도출 ▶ 학생들에 대한 징계 감소 ▶ 독해·맞춤법·수리력 등 인지부분 향상 ▶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 활발한 학습코칭 등
거주형 돌봄서비스 (OOHC : Out Of Home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폭력으로 인한 외상, 약물 등에 노출되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아동에게 거주지 제공 • 12~18세 아동을 대상으로 1가구에 4명이 거주하며,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형제/자매가 함께 집을 나온 경우, 최대한 동일한 시설에서 보호 • 자유롭게 집을 꾸밀 수 있는 자율성 부여 • 공동 운영 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중재 • 1:1 개별적 상담 진행
가정폭력대응서비스 (Family Violenc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아동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며, 초기대응, 사례관리, 모-자 관계회복, 치료서비스 제공 • 아동과 가족의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등 사례관리 진행 •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이해도 향상 및 초기대응력 제고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가정 (Foster ca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경우, 3가지 유형의 위탁형태를 통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지인· 친인척 ② 위탁가정 ③ Foster Care-OOHC에서의 생활 • 임시/응급/단기간/장기 유형으로 위탁양육 제공 가능 • 아동연령에 따른 재정지원의 정도, 희망기간 등이 상이하여 장기위탁돌봄의 어려움 발생으로 전문적 위탁가정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 제고
<p style="text-align: center;">가족서비스 (Family Serv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18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사례관리를 통해 합의된 목표달성(평균기간 6~9개월) ex) 학교적응이 어려운 아동에게 언어/작업치료사 연계, 가정폭력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에게 정서적 치료 제공, 음악교실을 통한 모-자간 관계개선 및 치료 지원 등 •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공기관 방문(병원, 법원 등)
<p style="text-align: center;">GOALS (Going Out And Live Successfu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청소년 지원사업 • 정부지원 없이 베리스트리트와 지역사회의 기여로 설립 • 아동 1인당 최대 2년 거주 가능하며, 정서지원과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공동생활 형태로 운영 • 서비스 지원을 통해 2년 내 학교복귀 및 일자리 지원, 공동체인식, 자존감 등 심리적 건강 향상, 해체된 가족의 유대관계 회복 등의 긍정적 결과 도출
<p style="text-align: center;">Youth Serv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까지 주거지원 가능한 상태이나, 최근 사회문화 및 생활을 반영하여 대상연령 상향(21세)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임대차비용, 가구, 교통비, 의복지원, 병원연계 등 ‘돌봄 이후의 지원-초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질의응답

Q1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마련을 어떻게 하나요?

- ▶ 기부금만을 통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연방정부 예산과 빅토리아 주 정부 예산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의 경우 기부금을 통해 진행한 후, 사업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안서 제출 및 예산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Q2 한국은 사업을 각각 나눠서 진행하며 예산이 각각 배정되고 있습니다. 베리스트리트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호주 전역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나요?

- ▶ 기관 규모에 따라 베리스트리트처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별적 사업을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기관도 있습니다.
다만 베리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아동 및 가족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나요?

- ▶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빅토리아 주는 아동과 가족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대상자가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의 기관만 방문해도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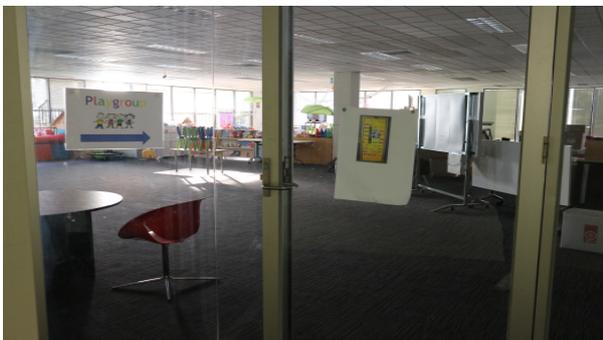
Q4 아동연구소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010년,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아동연구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부분의 타연구소는 대학 부설연구소로 연구만을 위한 형태라서 현안과악이 어려운 반면 아동연구소는 베리스트리트와 함께 운영됨에 따라 현안과악 용이
 - 2)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전문가이자 연구의 주체로서 협력 가능
 - 3) 혁신적 해결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실험적 시도 용이

■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각 기관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호주의 경우, 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큼.
- 국가(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외에 기부금·후원금 등을 통한 사업 운영을 통해 탄력적인 사업기획 및 진행이 가능함.
-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 드림스타트 운영 노하우,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 관리, 활용을 위한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베리스트리트의 아동연구소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상아동 연령이 만12세인 반면, 호주는 사업별로 상이하긴 하나 사업의 대상아동연령으로 전반적으로 만18세를 기준으로 함.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점진적으로 연령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현장사진



방문기관4			
6. 20.(수)	기관명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	
	소재지	Level 5, 50 Market Street, Melbourne Victoria 3000	
	연락처	03)9094-3515	홈페이지 https://www.cfecfw.asn.au

■ 운영 개요

1) (기관목표)

- 빅토리아 주의 아동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비영리기관)으로 아동권리를 위해 가족, 지역사회, 문화 연계 주장
- 가족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정책과 아이디어, 문화 공공정책에 대한 옹호자 개발

2) (설립배경)

- 1910년 호주 전체 출생아동 1,000명당 125명이 사망하는 상태로, CHILD SAVING으로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에 의해 빅토리아 주 내 설립
-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으로 초창기에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옹호에 대해 활동 시작

3) (주요업무)

-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정책 제언, 연구, 아동 및 가족지원기관 대변 등의 업무 수행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120여개의 회원기관 교육연수·포럼 개최 등 회원기관 관리
- 예방과 조기개입이 필요한 가족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 향후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왕립조사위원회를 통해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

4) (재정구조) 회원가입비용과 사업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으로 운영

- ※ 빅토리아 주정부는 아동보호기관 인력 총원(450여명), 원주민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가족서비스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 주요 내용

1) 교육연수 및 권리 옹호활동

- 정부가 인가한 연수기관으로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회원기관 종사자에게 교육연수 진행(유연한 노동에 관한 개선, 리더쉽 연수, 온라인 연수, 거주형

주택지원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 등)

- ‘OPEN(Outcomes Practice Evidence Network)’ 이라는 연구아젠다에 따라 회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위탁가정 부모, 기관, 돌봄 기관을 위한 포럼 등 시행
- 지역기관 관리와 더불어 아동 및 여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안, 연구 등의 옹호활동 진행
 - ex) 위탁가정이나 기관의 돌봄아동연령 기준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기관이용이 불가해 지는데 만18세라는 나이는 독립하기에 어린 나이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21세로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 지속적으로 전달
- (향후 전략)
 - 정부와 협력은 하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취약한 아동과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아동과 취약한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
 - 증거를 기반한 정책모델에 대해 회원기관에서 요청할 때 적극 지원
 - 회원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현장 업무수행능력 향상
 - 기관 자체적으로 최신정책 등 정보 수시 보완 등

■ 질의응답

Q1 정부지원은 전혀 없나요?

- ▶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지원받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 기관에 대해 정해진 지원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자체 평가를 통한 중요도 판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빅토리아 주에 있는 기관들은 모두 이곳의 회원인가요?

- ▶ 대부분 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큰 기관 뿐 만 아니라 개인회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비영리로 진행되는 기관은 우리 기관 뿐이며, NSW(뉴사일즈웨일즈)에 하나 더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기관 규모가 가장 큼니다.

Q3 틀봄아동연령기준인 21세 상향 조정이 확정되었나요?

- ▶ 우선적으로 현 기준인 만18세에서 3년정도 연장한 21세로 고정시키자는 의견이 개진된 것이며 고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대상아동연령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 또한 만18세의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을 통해 성장한 아동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대상연령기준을 2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 현 기준에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Q4 BERRY STREET와 기관의 형태나 성격이 다른가요?

- ▶ BERRY STREET는 1차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은 복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관리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BERRY STREET 기관장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제언해달라고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에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5 틀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업무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인지, 집에 머무르지 못할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일 경우, 회원기관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집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 판단되어 대상자가 위탁된 경우, 가정으로의 복귀는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족서비스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6 한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슷한 곳인가요?

- ▶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 또한 공식명칭은 협의회나 협의체이며, 수행하는 업무과정(절차)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유형은 비슷하나 규모와 주정부 단위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7 한국에는 아동자립지원정책으로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주도 이처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 ▶ 호주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매우 훌륭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교육 중퇴 등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고등교육까지 받을 확률이 낮고 졸업과 동시에 역경이 시작되는 등 겪는 어려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Q8 관련 기관들의 가입이 의무적인건가요?

- ▶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아동 및 여성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회원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9 회원기관들과의 연결망, 소통방법은?

- ▶ 회원기관들과의 소통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CEO와 재정담당자가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연 4회) 운영, 가족서비스분야/친인척위탁분야 등 각 분야별 실무분과회의(3개월마다 1회) 운영 등 정기적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분과회의는 질 평가 등 주제가 정해져있고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며, 공무원, 정부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등 정부와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10 개인회원의 유형은 어떤가요?

- ▶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 중 복지분야로 취업하고 싶거나 복지분야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있고, 이미 복지분야 종사자이지만 소속기관 외 해당 분야의 정보를 얻고자하는 경우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Centre for Excellence in child and Family Welfare에서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구자료 리뷰 등을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며 우리 또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주기도 합니다.

Q11 회원가입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 학생은 연 10달러, 일반 성인은 연 40~50달러입니다. 기관은 기관규모와 정부보조금 비율을 수익으로 환산하여 이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약 0.01%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Q12 아동권리에 대한 활동도 하는가?

- ▶ 유엔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아동권리 신장그룹의 회원으로 아동권리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관들끼리 네트워킹 모임(아동실무그룹)을 통해 호주 내 요구사항 등을 정리해서 문서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 시사점

- 비영리단체(자선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복지기관(회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연구 및 정책 제언 등 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각 분야별 실무분과회의, 상임위원회 등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는 등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회원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현장사진



방문기관5			
6. 21.(목)	기관명	Brave hearts	
	소재지	9 Byth Street Arundel BC, Gold Coast QLD 4214	
	연락처	07 5552 3000	홈페이지 https://bravehearts.org.au/

■ 운영 개요

- 1) (기관목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2) (설립배경)
 - 1997년 Hetty Johnston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이 발생
 - 당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민간기관의 후원을 통해 Brave hearts가 설립
- 3) (주요업무)
 -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중점사업 진행
 -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자료 및 과정 수립(ex. 노래 및 안무를 접목한 프로그램 등)
 - 호주 전역 아동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ex.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분석 및 사례관리 실시
 -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 실시
- 4) (주요현황)
 - 전문상담인력 10명~15명 상시 근무
 - 성범죄 피해 아동 사례분석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사례관리담당자 5명 근무
- 5) (재정구조) 정부지원없이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

■ 주요 내용

- 1) Counselling and Support
 - (지원대상) 퀘즐랜드 주 아동 중 성학대 피해아동
 - (지원내용)
 - 5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상담
 - 아동 성학대 피해가 있는 성인 등 피해아동 사후 지원
 - 부모교육 및 부모지원, 보호행동교육 실시 등

2) Education and Training

-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ex. 'Ditto' 라는 마스코트 사용을 통한 비디오 프로그램 등)
- 자녀보호, 관련 자원, 정보 제공 등 부모교육 실시
- 기관, 단체 등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3) Empower

- 전문가를 통해 아동 및 가족 교육 실시
- 1:1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례관리담당자와의 사례관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 Specialist crisis support line이라는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4) Protect

- 아동보호 관련 정부 정책 등을 위해 법개정 등 요청
- Child Advocacy Centre 구축을 통해 아동에 대한 꾸준한 교육 진행

【 성학대 피해아동 및 예방 관련 프로그램 】

구분	내용
Ditto's Keep Safe Adven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학대 주피해대상연령이 9세 미만이라는 결과에 따라 3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토'라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율동과 노래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 • 성범죄에 노출된 상황에서의 표현방법, 신체부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Ditto's Depu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학년~6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 저학년과 고학년이 파트너를 맺고, 영상 내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Ditto in a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활용하는 자료로, 학교 내에서 해당 내용을 자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CyberEc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 • 사춘기로 인해 2차 성징이 진행되기 전, 이와 관련된 지식, 정보 등으로 구성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내용 구성
Projecty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17세 아동은 1:1 대면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 성인과 가까운 연령대로 이성관계, 학교 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상담식으로 진행
Specialist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선생님, 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 종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진행

Childplace Health & Safety	•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교육내용, 규칙 등 개선
Turning Corners	• 12세~17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성범죄 상황 노출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SADS (Sexual assault Disclosure Scheme)	• 성범죄 피해 아동의 개인 정보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원치 않는 경우, 경찰 등에 기준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 다만, 경찰서에서는 원활한 조사 및 유사범죄상황 예방을 위해 정보는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

■ 질의응답

Q1 부모(친부)가 자녀를 성폭행한 경우 친권상실이 법으로 가능한가요?

- ▶ 호주는 해당 부분이 가정법으로 분류되어 있고, 경찰서로 신고된 아동은 접근금지, 쉼터, 위탁양육 등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조치를 취하며, 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지는 않습니다. 친권상실은 어렵지만 일정기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부모 접근 금지 등에 대해 진행합니다.

Q2 최근 한국의 경우, 청소년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매우 부족하다. 호주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어떠한 지원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나요?

- ▶ 성학대로 인해 한부모가 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경찰서 등으로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성학대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주 싱글마더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 등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3 브레이브하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기관 자체에서 개발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 ▶ 그렇습니다. 아동 성학대 중점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Q5 한국은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하나요?

- ▶ 호주 역시 6~7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하트에서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교육 외에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브레이브하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6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 ▶ 호주는 기본적으로 신고정신이 투철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웃 및 학교 등 학대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학대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조사를 통해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Q7

Brave Hearts의 경우 사업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 ▶ 퀸즐랜드 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퀸즐랜드 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Q8

퀸즐랜드주에 브레이브하트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나요?

- ▶ 왕따, 가정폭력 등 학대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아동보호기관은 2,500여개의 유사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전화신고 등으로 접수되는 성적학대 피해 건수는 약 8,500건, 그 중 200~250건은 장기간으로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Q8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호주의 법률 기준은 평균 3~10년으로 법률기준이 높지 않은 수준이며, 본 기관에서도 아동 성폭력의 법적처벌 기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강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토론 진행, 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청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속적으로 청원을 하고 있다.

■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학대 및 성폭력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미흡 및 국가적으로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실정임.
- 호주 또한 호주 내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미흡한 것을 보아 한국과 비슷한 문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다만, 정부 차원의 제도 이외에 지역사회 내 자발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 전문기관 설립, 기관 운영을 위한 후원자 발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별 프로그램 제작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피해아동 및 가족을 전문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여짐.

■ 현장사진



방문기관6			
6. 22.(금)	기관명	Department of Child Safety Service, Queensland Government	
	소재지	111 George Street Brisbane Qld 4000	
	연락처	07 3224 8045	홈페이지 https://www.communities.qld.gov.au/childsafety

■ 운영 개요

- 1) (기관목표) 아동의 건강과 교육, 안녕
- 2) (기관비전) 퀸즐랜드 주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돌봄과 보호체계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3) (주요업무)
 -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관리
 - 퀸즐랜드 내 아동보호 관련 시설운영 현황 파악
 - 비정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 4) (주요현황)
 - 퀸즐랜드 주 내 53개소 운영
 - 초기 콜센터 접수 직원 80명, 조사담당직원 220명, 지속적 개입 담당직원 약 500여명, 지속적 개입 담당직원 지원인력 200여명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1) 아동보호서비스
 - 가) (지원대상)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에 노출된 아동
 - * 토착 원주민,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 (정부 보호에 있는 아동 중 토착 원주민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문화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소속감 및 유대감 형성과 정체성 유지 독려)
 - ☞ 현재 8,000여명의 아동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
 - 나) (기본원칙)
 -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하는 ‘아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 아동보호시스템의 개입 전, 학대 등에 노출된 아동에게 빠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기개입서비스에 투자 지원
 - 신고접수된 가족 및 아동 중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
 - 신고접수된 가족 및 아동 중 정부차원의 개입(법적 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실시(아동보호법에 따라 가족 동의없이 가정방문 가능 및 가족

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 (지원절차)

① 신고접수(Intake)

- 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접수 후 행정처리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
- 소극적 개입과 적극적 개입으로 분류하여 진행

② 조사 및 사정(Investigation and Assessment)

- 조사를 통해 학대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입증하며,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속적 개입 진행
- 퀸즐랜드 아동안전서비스부서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조사권 부여받은 부서로 신고접수된 부모 및 아동과의 면담 진행하며, 특히 아동과 직접 만나고 면담하는 것을 중시

※ 필요 시, 경찰, 보건소, 학교, 친인척 등을 통해 정보 수집

○ 사정단계에서의 주요질문

- ㉠ 아동은 현재 안전한가?
- ㉡ 아동은 심각한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 위험에 처해 있는가?
-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 ㉣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가?

③ 지속적인 개입

- 조사 결과, 아동에 대한 가족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 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기개입서비스 연계
- 조사 결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속적 개입 실시
- 6개월마다 가족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례계획 수립 및 지속적 개입의 필요성 확인

【 지속적 개입 과정의 3가지 유형 】

구분	내용
지원서비스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가족체계 내에서 지원받는 경우로 12개월 이내로 개입 • 임신부나 태아출산 후 태아의 안전의 문제가 고려되는 경우 해당
부모동의 하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가족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족 내에서의 성장이 문제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 • 부모가 해당 부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단계적·집중적 개입 진행

<p>법적보호명령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명령은 2가지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기보호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년까지 유효 ▶단기보호명령의 경우, 아동안전서비스부에 후견인 권한 부여 ▶원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② 장기보호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보호명령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아동의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법정을 통해 장기아동명령 신청 ▶아동은 만18세까지 정부차원에서 보호받으며, 정부보호 하에 친인척, 위탁기관 등에서 성장 •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을 통해 개입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독립단체가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당 단체에서 수행
----------------------	---

■ 질의응답

Q1 해당 진행절차가 호주의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나요?

▶ 그렇습니다.

진행절차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2 주 정부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나요?

▶ 주정부 직원으로 현 부서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주 전역에 53개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 콜센터 접수 직원 80명, 조사담당직원 220명, 지속적 개입담당직원 대략 500여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이 외 지속적 개입 담당 직원을 지원하는 인력도 200여명정도 됩니다.

Q3 퀸즐랜드 주 정부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서비스부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아동복지에 대한 주 정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동안전서비스부에서 진행하는 아동보호 관련 예산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몇 년 전 전체적인 조직 개편으로 기존 예산에서 3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Q4 연계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업무를 수행하나요?

- ▶ 타 정부기관 및 연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시의회 지원을 받기 위해 연계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아 발생 방지, 교육,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퀸즐랜드 주 총리가 공헌한 내용에 따라 아동안전서비스부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은 주 정부 전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조사 평가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도구가 있나요?

- ▶ ‘체계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도구로 미국의 기관(연구기관)이 개발한 도구를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도구는 호주 내 여러 주 정부 및 타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종결과정까지 총 9가지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도구사용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는 ‘리스크평가 및 안전’이라는 도구, 지속적 개입과정에서는 ‘리스크재평가’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6 퀸즐랜드 주 내 담당자들의 부서 이동을 잦은가요?

- ▶ 부서 이동보다는 이직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서 직원 유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무기간 1년을 채운 직원의 경우, 기본 3년은 근무하지만 마약, 가정폭력,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개입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직원들 1년을 채우기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Q7 보호법적명령에 따라 장기보호명령아동으로 분리된 경우, 양육자의 변화로 중간에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 ▶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생긴 경우, 법정을 통해 아동보호장기명령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장기보호아동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Q8 한국은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과 분리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아동의 소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혹시 퀸즐랜드 주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아동의 소재를 부모에게 공유함으로써 인해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에게 아동의 소재를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이 위탁 가정에 있는 경우에도 아동과 부모는 만날 수 있으며, 가족과 연락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아동이 부모와 만날 때 담당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Q9 장기보호명령이동으로 가족과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 ▶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양육기술 등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등이 있으며, 부모와 아동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ontact center도 있습니다.

Q10 드림스타트의 경우, 학대아동이 아니더라도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¹⁾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학대아동의 경우에만 개입하나요?

- ▶ 아동안전서비스부서의 사례관리 개입 최소요건은 부모 중 한명도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발달상의 어려움이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사례개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서비스기관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Q11 한국의 바우처 사업과 같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 ▶ 사례계획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퀸즐랜드 주는 교육, 보건, 치과치료, 정신건강부분 등 아동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12 정부 외 아동보호와 관련된 민간 기관 및 파트너십이 있나요?

- ▶ 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은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과 관련된 민간 기관 및 파트너십 기관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블루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 블루카드 :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대해 신원 및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카드

Q13 2018년 호주 내 아동보호에 대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 ▶ 마약, 가정폭력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 보편적 복지가 정착된 호주에서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복지가 제공되고 있음. 자부담비용이 거의 없고 다양한 자원을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대상자가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 차원의 사례개입이 매우 체계적임을 알 수 있음. 접수부터 개입, 종결 과정까지 각 과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매뉴얼이 잘 정비되어 있음.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풍부하고 연계체계가 구조화됨에 따라 각 과정별·분야별 담당자 및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 현장사진



총 평

- 보편적 복지가 정착된 호주의 경우, 모든 아동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의 복지시스템 내에서 기본적인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무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참여하지 않는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를 돕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모델)을 통해 접근성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력기관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마음으로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조하고 있다. 파트너십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기관의 어려움, 문제점, 접근법 논의 등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
- 아동 및 가족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하나의 기관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의 경우, 아동안전서비스부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은 해당 부서만의 대상자가 아닌 ‘주 정부 전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라는 공헌을 주총리가 선포하고,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타 정부기관 및 연계기관과 아동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아동보호 관련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법적보호 명령으로 가족과 분리된 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아동 연령기준을 만18세에서 만21세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아동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호주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이 투철한 편이다. 호주는 국가적으로 모든 시민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당연한 의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율 또한 높은 편이다.
- 모든 아동 및 가족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 등 각 기관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시 사 점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의 다양한 서비스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대상자의 미참여 등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역시 대상자인 아동과 가족의 서비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참여 제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 호주 BestStart 사무소가 지역사회 내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의 중심 역할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시·군·구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전달체계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호주 BestStart 사업은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 뿐만 아니라 BestStart 사무소 간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상호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또한 지역 주체(기관)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므로 운영 노하우, 축적된 지식 등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現의 멘토-멘티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위해 아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어른의 관점’ 이 아닌 ‘아동의 관점’ 에서 항상 생각하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12세 연령 도래로 종결하고, 종결 심사시점에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15세까지 사례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현 여건상 호주의 대상아동 연령기준과 같이 만8세, 만21세까지 상향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아동 연령기준 상향 등 지속적인 고민 등 지역사회 내 더 많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례관리사 1인이 60명~80명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전 과정을 담당함에 따라 각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호주의 사례처럼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초기접수담당자, 조사담당자, 서비스개입담당자 등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례 전 과정별 인력과 역할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